

# 신앙 공동체를 위한 Reportable Conduct Scheme 안내서

A guide for faith  
communities  
on the Reportable  
Conduct Scheme



면책 조항: 본 안내서는 일반적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Reportable Conduct Scheme을 준수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안내서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였지만, 법률 자문의 의도는 없습니다. 법률과 법적 요건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되기 때문에 각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을 확인하고, 특정 상황에 맞는 법적 자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학대로부터 아동 보호

아동 학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법적 책무와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종교 단체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기관 내에서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관행과 행동 강령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관과 단체 내의 학대 혐의를 철저히 재빠르며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신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문서는 종교 기관이 아동 학대 혐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에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혐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 기관에 요구되는 조건을 변경하도록 법률과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종교 기관은 아동 학대와 아동 관련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조사하여야 합니다.

빅토리아주 정부에 의해 2013년에 설립된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the Commission)**은 **Reportable Conduct Scheme(the Scheme)**<sup>1</sup>을 관장하여 각 기관이 아동 학대와 아동 관련 부당 행위를 신고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Commission의 연락처는 본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sup>1</sup>

1 Scheme은 *Child Wellbeing and Safety Act 2005(the Act)*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 최근 역사



## Reportable Conduct Scheme의 정의

Scheme은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며 아동에 대한 권한을 가진 특정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 관련 중대한 부당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Commission이 확실하게 인지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Commission의 역할

- 혐의에 대한 기관의 대응책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이 대응책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합니다.
- 혐의를 접수한 기관을 지원하고 지도합니다.

Scheme은 기관의 직원과 자원 봉사자들에 의한 아동 학대와 아동 관련 부당 행위의 혐의에 대한 기관의 대응책을 개선합니다.

## 종교 기관의 준수 요건

종교 기관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기관장<sup>2</sup>**을 확인하고 지명해야 합니다.-기관장은 기관의 아동 학대 혐의를 관리하는 주된 책임이 있는 인물이며,
- 기관장과 함께 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체계와 발생 가능한 어떠한 혐의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기관장 지명에 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ccyp.vic.gov.au/reportable-conduct-scheme/for-organisations/#TOC-1>

종교 기관이 아동 학대와 아동 관련 부당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중대하게 다루도록 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 의무 행위나 신고 의무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심증이 있다면 종교 기관의 기관장은 반드시 Commission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고 의무

2 지명하려는 인물을 결정할 때에는, 그 인물이 다음에 해당되는 지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 인물이

- 기관내에서 상급자인가
-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가
-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가
- 지명에 동의하는가

행위를 어떻게 인지하고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 신고 의무 행위의 혐의

- 성범죄
- 성적 부당 행위
- 신체적 폭력
- 정서적 및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행동
- 중대한 방임

## 혐의 인지

기관에서는 신고 의무 행위나 신고 의무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부당 행위의 혐의를 반드시 신고하고 조사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하는 행위에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아동을 상대로, 아동을 데리고, 혹은 아동 앞에서 저지른 성범죄
- 아동을 상대로, 아동을 데리고 혹은 아동 앞에서 저지른 성적 부당 행위
- 아동을 상대로, 아동을 데리고 혹은 아동 앞에서 저지른 신체적 폭력
-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혹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동
- 중대한 아동 방임

고용인, 자원 봉사자, 직원, 종교 지도자와 보호자 혹은 계약자를 포함하여 종교 기관에서 일하거나 종교 기관과 관련된 누구든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Scheme에 해당되는 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Commission에 연락하십시오.

상기 기술한 사람들의 행위에 관한 혐의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기인이 아동과 직접 접촉이 없는 경우
- 직장 밖이나 기관의 책임 밖에서 해당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누구든지 신고 의무 혐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혐의를 제기하려면 해당 기관의 고용인이나 자원 봉사자가 신고 의무 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심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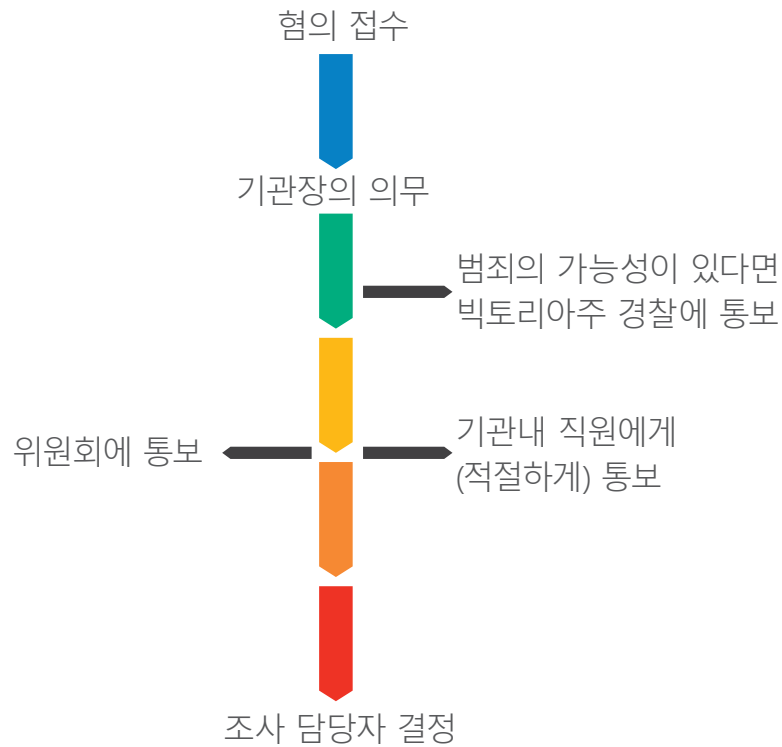
합리적인 심증이란 의심 이상이지만 증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심증이 확보되면 기관장이나 대리인은 본인의 심증에 대한 동조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혐의를 반드시 Commission에 신고하여,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관장이나 대리인은 **모든** 신고 의무 혐의를 Commission에 반드시 통보하여 각각의 신고 의무 혐의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 행위는 성인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상기한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동이 해당 기관에 속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아동과 관련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아동은 신고 의무 행위를 저지를 수는 없지만 아동 대 아동 사건에서 성인의 역할은 신고 의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행위의 처리 개시



## 혐의가 성립된 이후

모든 혐의는 반드시 기관장이나 대리인 앞으로 전달하여, 기관장이나 대리인은 근무일로 3일 안에 그 혐의를 Commission에 신고해야 합니다. Commission은 달력 날짜로 30일 이내에 취한 조치를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그 혐의가 범법 행위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교 기관 내에도 보고받아야 할 담당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신고 의무 행위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Commission에 추가적인 안내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조사 과정

1. 경찰에 혐의를 신고 (범죄인 경우)
2. 혐의가 신고 대상인지 평가
3. 혐의를 Commission에 통보 (근무일로 3일 이내)
4. 조사 계획과 착수
5.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 시행
6. 조사 보고서 작성 완료
7. 결과를 작성하거나 건의
8. Commission에 결과 보고

모든 신고 의무 행위와 신고 의무 행위에 연루될 수 있는 부당 행위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종교 기관은 자체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경찰의 신원조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기관장이 사실 관계 조사를 지정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 결과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 행위)

##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한 조사 개시

기관장이나 대리인은 신고 의무 행위의 혐의를 조사할 유능한 인물을 지명해야 합니다. 그 인물은 기관 내의 인물이거나 독립적인 조사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나 관련 인물과 실제적이거나 감지된 이해 상충이 있다면 조사관으로 지명해서는 안됩니다.

조사는 인터뷰 대상자의 신원과 증거의 출처를 포함하여 명확한 책임 범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아동을 인터뷰하는 방법은 성인 대상의 인터뷰와는 다르며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관이 아동 대상의 인터뷰를 위한 특별 연수를 받은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 당사자와 인터뷰 시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 조사 중의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적 증거, 예를 들면 휴대폰, 이메일
- 현장 검증, 예를 들면 사진, 그림
- 직접 증거, 예를 들면 증인, 인터뷰
- 전문가 증언, 예를 들면 의사, IT 전문가

##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한 조사 시행

조사 중에 시행하는 인터뷰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 아동의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개인 정보 보호와 비밀 보장-각 인터뷰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공개해야 합니다.
- 문화적 및 종교적 민감성-전통과 신념을 존중해야 합니다.
- 과정의 공정성-관련 인물을 공정하게 존중하여 대하여야 합니다.

조사 중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며 신고 의무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관장이나 대리인에게 보내는 조사관의 보고서는 그 혐의가 다음과 같은 지를 지정해야 합니다.  
substantiated, unsubstantiated, unfounded, or  
conduct outside the scope of the Scheme.

통상적으로 Commission은 입증된 결과를 Working with Children Check Unit에 보내어 혐의 당사자의 Working with Children Check를 재심사하도록 합니다.

### 조사 보고서 결과의 유형

#### 개연성의 균형상, 혐의란

- Substantiated
- Unsubstantiated
- Unfounded
- Conduct outside the Scheme

조사 결과 유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ommission의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Reportable Conduct Scheme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ccyp.vic.gov.au/reportableconduct](http://ccyp.vic.gov.au/reportableconduct)

이메일: [contact@ccyp.vic.gov.au](mailto:contact@ccyp.vic.gov.au)

전화: 03 8601 5281 또는 1300 782 978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통번역 서비스 기관 번호인 13 14 50으로 전화하셔서  
아동과 청년 위원회 번호인 03 8601 5281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Reportable Conduct Scheme 과 Child Safe Standards Resources

## Reportable Conduct Scheme 정보지-기관을 위한 안내

<https://ccyp.vic.gov.au/rcs-factsheets>

1. Reportable Conduct Scheme에 관하여
2. 신고 의무 행위의 정의
3. 기관장의 책임
4. 조사 개요
5. 그 외의 신고 의무
6. Child Safe Standards와 Reportable Conduct Scheme
7. Commission에 통보하기
8. 조사 결과
9. 성적 부당행위
10. 신체 폭력
11. 중대한 방임
12. 과거 혐의
13. 고용인과 자원 봉사자
14. Commission의 자발적 조사

## 정보지 번역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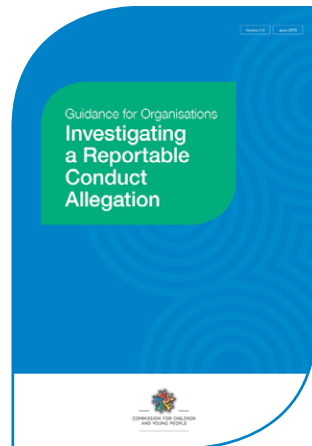
<https://ccyp.vic.gov.au/child-safety/resources/translated-information-sheets>

- Arabic
- Burmese
- Chinese (Simplified)
- Chinese (Traditional)
- Dari
- Dinka
- English (plain) (한국어)
- Greek
- Hindi
- Indonesian
- Korean
- Pashto
- Persian – Farsi
- Punjabi
- Somali
- Vietnamese



## 기관을 위한 안내서-신고 의무 행위 혐위에 대한 조사

<https://ccyp.vic.gov.au/guides>



## 아동 복지기관 설립 안내서



## 비디오와 프레젠테이션

<https://ccyp.vic.gov.au/guides>





---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